[별표 5의6] <개정 2014.6.10>

실외후사경 설치기준(제50조제1항제2호 관련)

구분	종류	실외후사경	광각 실외후사경	근접 실외후사경
	곡률반지름	120cm 이상	30cm 이상	30cm 이상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		○		
차량총중량 4.5톤 이하의 화물·특수자동차		○		
차량총중량 4.5톤 초과 7.5톤 이하의 화물·특수자동차		○		
차량총중량 7.5톤 초과 화물·특수자동차		○	○	○

주) 1. 실외후사경 및 광각 실외후사경은 운전자측과 승객측에 각각 1개씩, 근접 실외후사경은 승객측에 1개 설치하여야 한다.

2. 승용자동차와 경형승합자동차의 운전자측에 볼록거울 실외후사경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각 점에서의 곡률반지름과 평균곡률반지름의 차이가 평균곡률반지름값의 15퍼센트 이하이어야 한다.

3. 근접 실외후사경은 지상으로부터 2미터 이상 높이로 설치되어야 한다. 다만, 차체 구조상 지상으로부터 2미터 이상 높이로 설치가 곤란한 경우는 제외한다.

4.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실외후사경의 경우는 곡률반지름이 100cm 이상이어야 한다.

5. 동일 후사경에 서로 다른 곡률을 가진 반사면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이 중 하나 이상의 반사면이 곡률반지름 및 후방시계범위를 충족하여야 한다.